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에 대한 부당한 서류 요구

□ 신청 취지

-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안성시 ▽▽동 ☆번지 임야를 매수하여 前 소유자의 동의하에 허가권자 명의 변경 및 허가기간 연장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 변경 도면 등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관습적으로 허가 변경 도서를 요구해 온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처리 요청함.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완서류를 요구하였고 산지전용 변경 협의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함.
- 신청인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 서류 중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허가받은 부지 중 소유권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 변경 관련자료를 보완 요구하였음.

□ 판단 및 결론

- 신청인이 前 소유자가 허가받은 사업계획서 상 변동이 없고 소유권 명의 변경 및 허가기간 연장만을 원하는 경우라면 신청서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개발행위허가 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- 신청인이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였으므로 현재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변경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지전용 담당부서에서 허가 부지 중 소유권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류는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으로 “의견표명” 함.

☞ 수용